

2007. 12. 17(월) 10:00



142회 거창군의회(정례회)
제3차 본회의

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

심 사 보 고 서

총 무 위 원 회

【 목 차 】

1. 식품진흥기금	4
2.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	5
3.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	6
4. 노인복지기금	7
5. 여성발전기금	8
6. 아립예술제진흥기금	9
7. 체육진흥기금	10

<의안번호 제2007 - 61호>

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7. 11. 20.

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 : 2007. 11. 20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7. 12. 12(제6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사유
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64조 ,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및 각 기금별 기금 설치·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리중인 기금에 대하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함.

3. 2008년도 기금개요

가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 제 133조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8조

나. 운용방침

- 자금운용체계의 이원화(총괄, 운영부서)로 책임, 투명성 확보
- 총괄부서(기획감사실), 운영부서(각 기금관리 운용 실.과)
-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, 운용

4.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<총괄>

기 금 명	2007년말 현 재 액	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			2008년도말 현 재 액
		수 입	지 출	차액(적립)	
7 개	2,748,547	781,641	500,856	280,785	3,029,332
식품진흥기금	27,832	25,700	43,532	△17,832	10,000
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	432,476	68,355	20,600	47,755	480,231
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	137,431	400,362	346,084	54,278	191,709
노인복지기금	1,007,977	46,000	40,000	6,000	1,013,977
여성발전기금	681,297	188,180	30,000	158,180	839,477
아름예술제진흥기금	430,005	50,640	20,640	30,000	460,005
체육진흥기금	31,529	2,404	0	2,404	33,933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

■ 종합민원실 (p6)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07년말 현 재 액	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			2008년도말 현재액
		수 입	지 출	차액(적립)	
식품진흥기금	27,832	25,700	43,532	△17,832	10,000

- 식품진흥기금은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과 음식문화개선 등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재원은 과징금, 출연금, 기타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,
- 기금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말 현재액 27,832천원이며, 수입 25,700천원, 지출 43,532천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0,000천원임.
- 2008년도 자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 중 과징금 등 기타 잡수익의 수입액이 전년도 수입액보다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
- 또한 민간경상보조금 중 음식문화 개선, 선진지 견학, 임차료 지원 1,500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임차료가 기금의 사용 용도에 적합한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■ 주민생활지원과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07년말 현 재 액	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			2008년도말 현 재 액
		수 입	지 출	차액(적립)	
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	432,476	68,355	20,600	47,755	480,231
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	137,431	400,362	346,084	54,278	191,709

◆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(p12)

- 거창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의 중·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조성 목표액은 5억원이며, 수입재원은 군의 출연금, 기탁금, 기타수입금 등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음.
- 지원기준(대상)은 중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40만원을, 중학교 특별장학생과 고등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각각 60만원을,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게는 80만원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,
-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말 현재액은 432,476천원으로 수입 68,355천원, 지출 20,600천원이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80,231천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음.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.

◆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(p19)

-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· 운용조례에 의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자금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
-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37,431천원이며, 수입 400,362천원, 지출 346,084천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91,709천원이 되며 기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음.
-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■ 사회복지과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07년말 현 재 액	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			2008년도말 현 재 액
		수 입	지 출	차액(적립)	
노인복지기금	1,007,977	46,000	40,000	6,000	1,013,977
여성발전기금	681,297	188,180	30,000	158,180	839,477

◆ 노인복지기금(p26)

-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3조(기금의 조성)에 의거 거창군내 거주하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조성목표액은 10억원으로, 2007년도에 그 목표를 달성하였음.
-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,007,977천원이며, 수입 46,000천원, 지출 40,000천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,013,977천원이 되며 농협에 예치되어 있음
- 2008년도 지출내역에서 노인복지 공모사업 40,000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 사업내용이 무엇인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◆ 여성발전기금(p33)

-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(기금의 설치) 및 거창군 여성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·운용조례에 의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
- 당초 조성목표액이 5억원을 2006년도에 달성하였으며, 목표액 적립금 5억원에 대한 이자수입(연 20,000천원)으로는 당해연도 사업실시 지원금으로 부족하여 2007년에 기금규칙을 개정하여 조성목표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.
-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말 현재액 681,297천원이며, 수입 188,180천원, 지출 30,000천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839,477천원이 되며 농협에 예치되어 있음.
- 당초 기금설치 목적 및 용도에 부합되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■ 문화관광과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07년말 현 재 액	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			2008년도말 현재액
		수 입	지 출	차액(적립)	
아림예술제진흥기금	430,005	50,640	20,640	30,000	460,005
체육진흥기금	31,529	2,404	0	2,404	33,933

◆ 아림예술제 진흥기금(p40)

-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은 거창군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운영조례에 의거 향토 문화예술축제인 아림예술제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재원 조성방법은 출연금과 행사잉여금, 기타수입금 등으로 하고 있으며,
 - 지원기준은 매년 아림 예술제 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총 행사비의 일정부분을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기금을 지출하고 있음.
-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, 2007년 말 현재액 430,005천원이며 수입50,640천원, 지출 20,640천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60,005천원임.
- 향후 기금의 사용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◆ 체육진흥기금(p45)

- 체육진흥기금은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조례에 의거 거창군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주요규정을 살펴보면
 -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이자액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,
 - 기금사용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
 - 기금조성 재원은 군 출연금 및 보조금과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료, 사용료 수입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.
-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31,529천원으로 수입 2,404천원이며,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3,933천원임.
- 향후 기금 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.

7. 수정내역 : 해당없음.

8. 삭감조서 : 해당사항 없음.